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6019호('99. 9. 7)) 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정부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 제도가 민간기관의 안전인증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에서는 동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고자 지난 3월 16일(15:00)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회의실(소비자보호원 청사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편집자주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0 -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기타 필요한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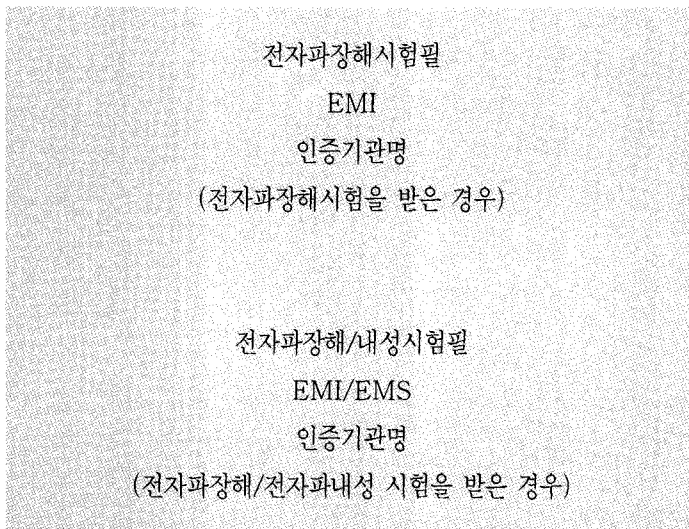
제2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및 기타 필요한 표시는 [별표1]과 같으며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은 개별기준에 따른다.

제3조(표시의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는 국내제품인 경우 출고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방법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칭의 표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마크는 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제2조에 의한 표시는 당해제품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구조상 당해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

4.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표2] “제품사용설명서 작성 표준용어”를 참고할 수 있다.
5. 전선중에서 ①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 이하마다(600V 고무 절연전선, 고무코오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코오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및 정격전압을(내온 전선을 제외한다)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6.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할 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제품마다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중 지역번호와 제조구분번호는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 있어서는 EMI 또는 EMI/EMS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이 있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아프터서비스표시) “전기용품의 표시” 사항란에 아프터서비스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청 회 소 식

[별표1]

전기용품의 표시(제2조 관련)

1. 안전인증의 마크
2. 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칭
4. 정격전압
5. 제조업체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
6. 이중절연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回의 기호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8.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 등)

[별표 2]

제품사용설명서 작성 표준용어

[별표 5]

안전인증번호의 부여기준(제11조 관련)

안전인증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A	D	0	1	0	0	1	-	0	0	1
가	나	다	라					마		

가. 안전인증기관 구분 코드

나.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기타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도	H	제 주 도	P	북 한	Q

다. 제품분류 코드

별표2 및 별표2의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적용범위의 분류를 따른다.

제품분류	코 드	제품분류	코 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가정용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 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 캐패시터 또는 기타 교류용 전기기기	03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 변압기	06		

라.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 : 3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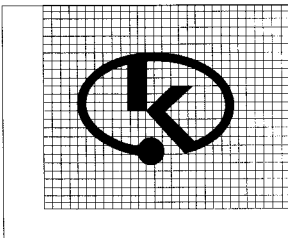
마.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의 일련번호 : 3자리

안전인증번호 사용방법

제11조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시에 기재하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표시에 사용한다.

안전인증의 표시(제17조제1항 관련)

도형



표시방법



비고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형크기는 동 인증의 표시를 하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공 청 회 소 식

수 있다.

- 나. 안전인증의 표시는 당해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동 표시의 주위에 기타 안전인증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라. 안전인증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안전인증의 표시는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료나 표면이 거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협회인사소식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는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 회원사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위하여 4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경력직 신규채용 및 승급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

1급 최기호 부장(전기용품종합시험연구소)

2급 임창기 차장(전기용품종합시험연구소)

● 승급인사

3급 서우진 과장(교육홍보부)

3급 홍성훈 과장(기술지원부)

3급 홍인선 과장(안전인증센터)

(이상은 개나다순)

5급 한춘근(교육홍보부)